

연구비관리지침 신·구대비표

(2021.2.1 개정)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제7조(연구비 편성) 과제신청시, 연구비는 다음 각호에 따라 편성한다.</p> <p>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연구시설·장비비</p> <p>가.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(단계)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·장비(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 기관이고,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), 연구시설의 설치·구입·임차·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(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, 설계비, 감리비, 건축비, 부지 매입·조성비 등 포함)</p> <p>나. SW 구입비, 시설장비개발경비, 연구시설·장비 사용료 바우처(중기부)</p> <p>⑤ 연구재료비</p> <p>가. 시약(試藥)재료구입비</p> <p>나. 시작품(試作品) 및 시제품(試製品) 제작비</p> <p>다. 시험설비제작비</p> <p>라. 전산처리관리비</p> <p>마. 외주가공비</p>	<p>제7조(연구비 편성) 과제신청시, 연구비는 다음 각호에 따라 편성한다.</p> <p>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연구시설·장비비 (개정: 2021.2.10)</p> <p>가. 구입·설치비</p> <p>나. 임차비</p> <p>다. 운영비(유지·보수비, 운영비, 이전 설치비 등)</p> <p>라. 인프라조성비(연구인프라 조성 목적 사업에 한함)</p> <p>⑤ 연구재료비 (개정: 2021.2.1)</p> <p>가. 시약·재료 구입비</p> <p>나. 관리비(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)</p> <p>다. 시험제품·시험설비 제작비</p>	<p>※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정사항 반영</p> <p>※⑨~⑪항 제7장 간접비로 통합</p>

<p>⑥ 연구활동비</p> <p>가.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</p> <p>나.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·복사·인화·슬라이드 제작비, 공공요금,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</p> <p>다. 전문가 활용비, 국내외 교육훈련비, 도서 등 문헌구입비, 회의장 사용료, 세미나 개최비, 학회·세미나 참가비, 원고료, 통역료, 기술도입비 등</p> <p>라. 시험·분석·검사, 임상시험, 기술정보수집, 특허정보 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</p> <p>마.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</p> <p>바. 연구과제운영비(사무용품비, 회의비, 식비, 연구환경 유지비 및 기타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(직접비의 5% 이내)</p> <p>사. 사무기기 및 소프트웨어 경비(PC, 사무용기기 등 범용성 장비 및 OS, 오피스, 백신 등 소프트웨어. 단, 사업계획서에 반영시)</p> <p>아. 목표가 분명한 대형연구과제 등의 성공을 위한 기획 관리 비용(개정: 2019.9.1)</p> <p>⑦ ~ ⑨ (생략)</p> <p>⑩ 지식재산권출원·등록비: 프로그램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·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 또는 기술 가치 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</p> <p>⑪ 과학문화활동비: 연구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, 강연, 체험활동, 연구실 개방</p>	<p>⑥ 연구활동비 (개정: 2021.2.1)</p> <p>가.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</p> <p>나.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</p> <p>다. 회의비(회의장 임차료, 속기료, 통역료, 회의비 등)</p> <p>라. 국내·외 출장비</p> <p>마. 소프트웨어 활용비</p> <p>바. 연구실운영비</p> <p>사. 연구인력지원비(교육훈련, 학회·세미나 참가비, 야근식대 등)</p> <p>아. 종합사업관리비</p> <p>자. 기타경비(문헌구입비, 논문 게재료, 인쇄·복사·인화비, 슬라이드제작비, 제세공과금, 우편요금, 택배비, 수수료, 공공요금 등)</p> <p>⑦ ~ ⑨ (생략)</p> <p>⑩ (삭제: 2021.2.1)</p> <p>⑪ (삭제: 2021.2.1)</p>	
---	--	--

<p>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</p> <p>⑫ 연구실안전관리비: 당해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연구실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</p>	<p>⑫ (삭제: 2021.2.1)</p>	
<p>제10조(연구비 집행 원칙) ① ~ ③ (생략)</p>	<p>제10조(연구비 집행 원칙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연구비 집행 및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원활한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모든 연구비의 집행은 연구비카드(연구비카드 비대상 과제는 법인카드 사용) 또는 계좌이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,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카드 집행은 불인정한다. (개정: 2021.2.1)</p>	<p>※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정사항 반영 (연구비카드 집행 또는 계좌이체) 원칙)</p>
<p>제11조(연구비카드) ① 연구비 집행 및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원활한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모든 연구비의 집행은 연구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, 카드 사용이 어려운 항목은 계좌이체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. 단, 연구비카드 비대상 과제의 경우는 법인카드로 집행해야 하며, 개인카드 집행은 불인정한다.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	<p>제11조(연구비카드) ① (삭제: 2021.2.1)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	<p>※10조 ④항으로 흡수</p>
<p>제13조(구매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기타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의 개인용 컴퓨터 구입은 해당 연구계획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거나 추가 구매할 경우에 산학협력단장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개인용 컴퓨터(PC 및 프린터) 1대를 대학의 구매 절차에 따라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(신설: 2015.1.1)</p>	<p>제13조(구매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기타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계획서에 계상되지 않은 범용성 장비(컴퓨터, 프린터 등 사무용기기 및 주변기기, 소프트웨어 등)는 수행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, 연구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에만 연구계획변경 신청 및 승인을 통해 구입이</p>	<p>※연구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범용성 장비 구입기준 명확화</p>

	가능하다.(신설: 201.5.1.1)(개정: 2021.2.1)	
제17조(회의비) ① (생략) ② 당해 연구과제와 관련된 회의비로 참여연구원 및 외부 참여연구자와 회의를 하고 식비 등으로 사용할 때에는 사전 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(회의목적, 회의일시, 회의내용 등이 포함)을 작성·유지해야 하며, 회의에 필요한 실소요경비를 계상한다. ③ ~ ⑥ (생략)	제17조(회의비) ① (현행과 같음) ② 당해 연구과제와 관련된 회의비로 참여연구원 및 외부 참여연구자와 회의를 하고 식비 등으로 사용할 때에는 사전 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(회의목적, 회의일시, 회의내용 등이 포함)을 작성·유지해야 하며, 회의에 필요한 실소요경비를 집행한다. 단, 10만원 이하 회의비의 경우 영수증만 제출하되, 지급 신청 시 회의개요(회의목적, 일시, 장소, 참석자 명단 등)은 명기해야 한다. (개정: 2021.2.1) ③ ~ ⑥ (현행과 같음)	※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정사항 반영 (10만원 이하 회의록 생략)
제19조(연구장비비통합관리) 연구장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“연구장비비 통합관리 제도”를 도입한다.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 (신설: 2019.9.1.)	제19조(연구시설·장비비통합관리) 연구시설·장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“연구시설·장비비 통합관리 제도”를 도입한다.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 (신설: 2019.9.1.) (개정: 2021.2.1)	※용어 변경
제20조(간접비) ① 간접비 집행을 직접비와 연동하여 과도한 간접비 집행을 방지해야 한다. (지원기관별 인정기준에 따름) 가. 연구비 정산결과 직접비 집행비율이 50% 미만인 경우 해당과제 연구간접비는 직접비 집행비율에 비례하여 인정하고, 초과금액은 회수 처리(신설: 2019.9.1)	제20조(간접비) (삭제: 2021.2.1)	※제26조(간접비)로 통합
제26조(간접비) ① 간접비는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 산학협력단 회계 내에서 아래와 같은 용도로 사용한다.	제26조(간접비) ① 간접비는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 산학협력단 회계 내에서 아래와 같은 용도로 사용한다.	※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정사항 반영

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연구비 중앙관리에 필요한 경비 2.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3.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 4.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5.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대학의 공통지원경비 6.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, 보안교육 등 연구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7.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, 학술정보용 도서 및 해외전자정보(Web-DB) 구입비, 실험실 운영지원비, 학술대회 지원비, 논문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 8. 기타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. 단, 개인성 경비(물품, 경조사비, 제세공과금 등), 재화성 유가증권(상품권 등) 및 접대성 경비(서비스)로 지출 불가 <p>② ~ ③ (생략)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인력지원비: 연구지원인력 인건비, 능률성과급 등 2. 연구지원비: 기관 공통비용, 사업단 운영비, 기반시설·장비구축·운영비, 연구실안전관리비, 연구보안관리비, 연구윤리활동비, 연구활동지원금 등 3. 성과활용지원비: 과학문화활동비, 지식재산권출원·등록비, 기술창업 출연·출자금 등 <p>② ~ ③ (현재와 동일)</p> <p>④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직접비 집행비율이 50퍼센트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정산기준에 따라 처리한다. (신설: 2021.2.1)</p>	
<p>제27조(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, 과학문화활동비, 연구실안전관리비) ① (생략)</p> <p>② 지식재산권출원·등록비는 다음에 따라 운영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예산반영: 연구과제별 “간접비 총액의 10%” 	<p>제27조(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, 과학문화활동비, 연구실안전관리비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지식재산권출원·등록비는 다음에 따라 운영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예산반영: 연구과제별 “간접비 총액의 10%” 	<p>※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정사항 반영</p>

2. 운영부서: 지식재산권 관리부서(별도 계정부여)
 3. 집행용도: 프로그램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·등록에 필요한 비용 또는 기술가치 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
 4. 불인정 항목: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를 타 비목으로 변경하거나 용도 외 사용한 경우

③ ~ ④ (생략)

2. 운영부서: 지식재산권 관리부서(별도 계정부여)
 3. 집행용도 (개정: 2021.2.1)
 -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·등록·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비용
 -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모든 비용
 - 국내·외 표준등록 등 표준화(인증 포함) 활동에 필요한 비용
 - 연구노트 작성·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·운영, 연구노트 교육·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비용
 4. 불인정 항목: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를 타 비목으로 변경하거나 용도 외 사용한 경우

③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28조(기술개발비) 포스코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에게 기초기반 기술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과제발굴을 위해 기술개발비를 아래와 같이 지원한다.

① 예산반영

구분	일반과제	철강기초 (BOT&StSc)과제	교육/인력양성 프로그램
반영비율	당해년도 포스코 간접비 요율 적용		

*포스코의 경영 연건에 따라 상기 비율은 변동될 수 있음

② (생략)

제28조(기술개발비) 포스코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에게 기초기반 기술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과제발굴을 위해 기술개발비를 아래와 같이 지원한다.

① 예산반영: 당해년도 포스코 간접비 요율 적용 (개정: 2021.2.1)

② (현행과 같음)